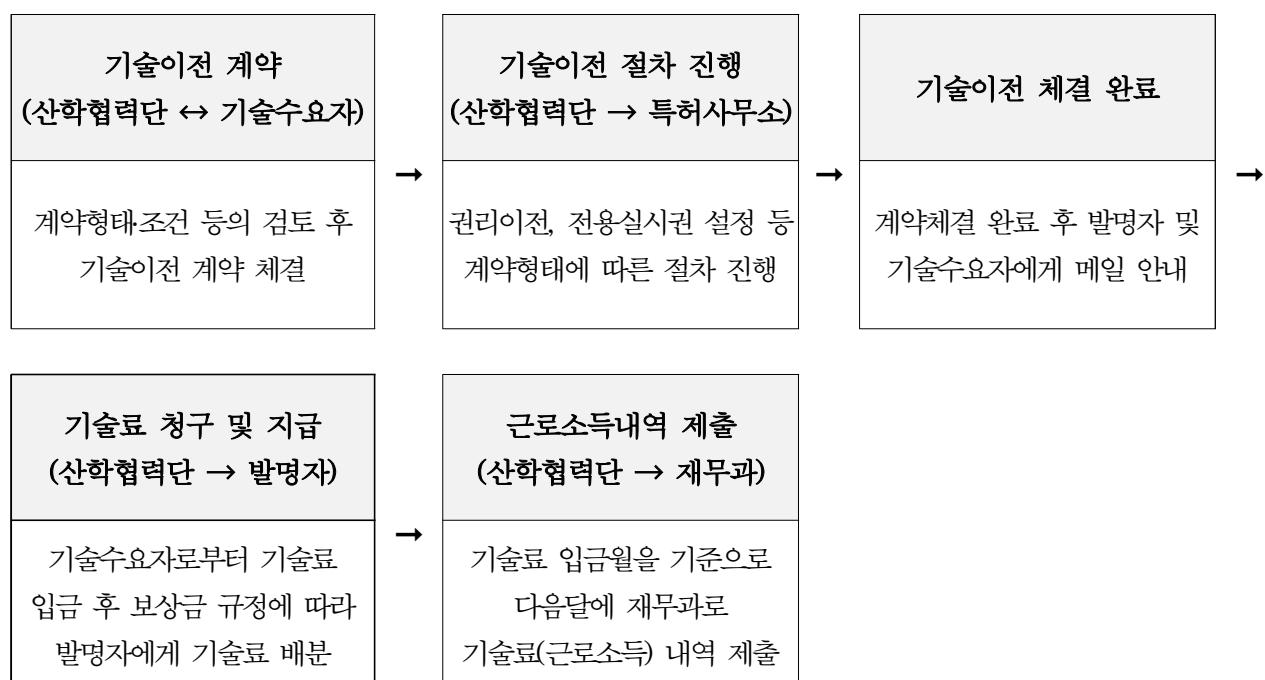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(Know-How 포함)을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이라 함)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기술이전 업무



3. 주요내용

-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 - 기술이전 계약 완료 후 입금된 기술료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 발명자 배분
 - 실시료 배분기준

2천만원 이하							2천만원 초과분	
발명자 주도		산학협력단 주도		중개기관 주도			발명자	산단
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중개기관		
90%	10%	70%	30%	70%	20%	10%	65%	35%

- 특허권이 없는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은 발명자 90%, 산학협력단 10%로 배분
-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
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(이하 “기술지주회사” 라 함)의 중개에 따라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 50%를 지급하고, 나머지 50% 중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의 80%는 기술지주회사의 중개보수금으로 지급
- 기술료 기여자 보상금 지급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※ 발명자 이 외의 자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기여한 경우 수익금의 5% ~ 10%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가 수령할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기술이전 기술료 근로소득세 적용

- 기술료 : 기타소득세 → 근로소득세 적용
 - 2017. 1. 1.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타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변경

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- 특허권이전료 및 로얄티(기술이전 포함, 입금일 기준)등의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당 40점을 인정하고 총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백만원당 20점을 가산(출원인이 “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” 인 경우만 인정)